

2014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후 협력

일시 : 2014년 5월 23일(금) 9:30-13:00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센터 105호

주최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협력 :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후원 : 양서원 출판그룹

학술대회 일정

09:3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15	개회사, 환영사 서혜전(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 대구한의대교수) 서영숙(한국아동학회 회장, 숙명여대 교수)	
10:15~10:30	격려사 변창훈(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축사 이미영(대구시지역아동센터임원단협의회 회장) 양순정((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이사장)	사회자 김현자교수 (두원공과대)
10:30~11:15	주제 발표 1 아동 권리와 방과후 돌봄체계간 협력 이향란(전 전지협 부설 아동문제연구소장) 양윤이(전(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이사장)	
11:15~11:30	다과와 답소	
11:30~12:10	주제 발표 2 방과후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여현진(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장)	
12:10~13:00	종합토론 좌 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노성향(대구대 교수) 박진현(예파라기지역아동센터장) 조은경(성서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양유진(대구남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자 황성하교수 (대구한의대)
13:00~13:10	질의응답 및 폐회사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사 말

서혜전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반갑게 다가온 따뜻한 봄입니다.

2014년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에서는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후 협력’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98년 한국아동학회 방과후아동지도연구회로 첫 모임을 시작하고 2002년 3월 창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방과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가 있었고, 초등돌봄교실이라는 학교내 방과후 보호의 체제 마련과 확대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본 학회는 지역 방과후 돌봄서비스간의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현장의 다양한 의견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방과후 연계가 각 지자체별로 잘 진행되어 지역에 맞는 모델이 마련되고 있는가, 기존의 목표대로 사각지대의 새로운 아동을 발굴하여 협력가운데 수용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와 방과후 연계에 대해 방과후 각 기관의 종사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이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핵심주제로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 실무, 연구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활발한 토론의 장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축 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하여



국회의원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반갑습니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 방과후아동지도학회 주최와 지역아동센터경북지원단 협력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후 협력’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동에 대한 안전과 돌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에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후 협력’을 논의하는 춘계학술대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뜻 깊은 토론회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서혜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서영숙 한국아동학회회장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향란 전 아동문제연구소장님과 양윤이 전 초등학교교육조사연합회 이사장님, 여현진 지역아동센터경북지원단장님, 그리고 토론을 하여주실 노성향 대구대 교수님, 박진현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장님, 조은경 성서초등학교 초등돌봄전담사님, 양유진 대구남구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PM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고양시 세 자매 사건’은 우리나라 아동 돌봄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미진학 또는 중퇴 등 학교에서 방치된 아동에 대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미흡, 복지대상 발굴 사각지대 등 부실한 관리시스템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부모와 가족의 책임영역으로만 치부해왔고, 사회양극화 심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 기능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약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2009년 기준 0.8%로 OECD 평균 2.3%의 3분의 1수준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자매 사건과 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방임되거나,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늘어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유사중복, 누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나홀로 아동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교중심의 부처통합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또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것인지가 불투명하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질의 교육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전락하고, 신청학생에 비해 강사들이 부족하며, 늦은 저녁의 경우 학교보안관을 제외하면 교직원이 거의 없어 안전에 취약하고, 돌봄 전용 교실 미확보와 예산 부족 등 졸속 운영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백은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NSR)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시설과 돌봄시설, 복지시설 간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법률안인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국회에 제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며,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획 및 조정 등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돌봄서비스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과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과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의 춘계학술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이미영

지역아동센터 임원단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과후협력과 아동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확대로 방과 후에 다양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과 후서비스는 3개 부처의 3개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방식이나 관리체계의 개선, 기관들간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수립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및 구축 운영 매뉴얼’도 시행되었고, 2014년에는 ‘지역돌봄은 영계획 수립·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배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과후돌봄 정책들의 변화 과정 속에서 오늘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가 방과후아동돌봄서비스들간의 올바른 협력 방향을 함께 구상하고 활발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견을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3개 방과후 기관들이 협력을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견들을 좁혀나가는 자리가 되어 지역에 맞는 방과 후 협력 모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양순정

사단법인 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의 장을 마련하시느라 헌신하신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서혜전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지역 방과후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간의 성공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의 장을 마련한 만큼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무상 돌봄 확대 정책 시행 원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맞벌이 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무상 확대 운영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등무상돌봄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이 시점이 이러한 논의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향상 방안 마련과 지역 연계 돌봄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축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방과후아동지도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무상 돌봄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정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목 차

주제발표 1	아동 권리와 방과후돌봄체계간 협력	11
	이향란(전 전지협 부설 아동문제연구소장)	
	양윤이(전(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이사장)	
주제발표 2	방과후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41
	여현진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장)	
종합토론	1. 노성향(대구대 교수)	54
	2. 박진현(예파라기지역아동센터장)	57
	3. 조은경(성서초등학교 돌봄전담사)	62
	4. 양유진(대구남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PM)	71

주제 발표 1

아동 권리와 방과후 돌봄체계간 협력

이향란(전 전지협 부설 아동문제연구소장)
양윤이(전(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이사장)

주제발표 1

방과후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담당 종사자들의 의견 조사 결과¹⁾

이향란

전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윤이

전(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이사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박근혜 정부는 방임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방과 후 시간 동안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방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를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관한 한 지금까지 그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과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배제된 상황이다. 또한 교육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했던 학교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기능을 해야 하는 특히 야간보호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상당한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사들은 초등돌봄교실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역시 모두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1) 본 발표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사)초등보육교사연합회에서 후원하여 2013년에 이루어진 '사회적돌봄서비스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것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의 종사자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방과후서비스의 양대축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사들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방과 후 정책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사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돌봄 실태를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양식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동안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지역아동센터는 89%, 초등돌봄교실은 57%로 나타났다.

응답한 설문지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퍼센트, 분포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교사간의 차이, 협력 유무에 따른 차이, 아동 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통계검증인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평균차이와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II.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소속기관별 종사자 연령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일반적인 사항을 비교한 결과 첫째, 종사자의 연령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chi^2=38.531$, $p<.001$). 두 기관모두 40대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50대와 30대 종사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소속기관별 종사자 연령

단위: 명(%)

연령대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대	49(8.7)	3(2.2)	38,531***
30대	95(16.9)	18(12.9)	
40대	234(41.6)	97(69.8)	
50대	169(30.0)	20(14.4)	
60대	16(2.8)	1(0.7)	
평균(SD)	44.63(9.25)	44.81(5.34)	
계	563(100.0)	139(100.0)	

■ 소속기관별 종사자 경력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경력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평균 4.78)의 경우, 1-2년 종사자가 34.7%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돌봄교실(평균 4.23)에서도 1-2년이 45.1%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38.611$, $p<.001$).

〈표 1-2〉 소속기관별 종사자 경력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2년	176(34.7)	55(45.1)	38,611***
3-4년	111(21.9)	49(40.2)	
5-6년	83(16.4)	10(8.2)	
7-8년	79(15.6)	5(4.1)	
9-10년	37(7.3)	3(2.5)	
11년이상	21(4.1)	0	
평균(SD)	4.78(.23)	4.23(2.44)	
계	507(100.0)	122(100.0)	

■ 소속기관별 지역특성

소속기관별 지역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35.4%, 30.7%로 나타났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응답자의 92.0%가 대도시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143.42$, $p<.001$). 농산어촌의 경우, 그동안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각 지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어촌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아동센터를 고려할 것을 꾸준히 제안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소속기관별 지역특성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대도시	203(35.4)	127(92.0)	143.42***
중소도시	176(30.7)	4(2.9)	
농산어촌	185(32.3)	7(5.1)	
기타	9(1.6)	0(0)	
계	573(100.0)	138(100.0)	

■ 소속기관별 보수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임금차이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63.2%가 100-15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38.7%가 100-15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보수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교사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보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88.225$, $p<.001$).

〈표 1-4〉 소속기관별 종사자 보수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00만원 미만	158(29.4)	35(25.5)	88,225***
100-150만원 미만	340(63.2)	53(38.7)	
150-200만원 미만	35(6.5)	49(35.8)	
200만원 이상	5(0.9)	0(0)	
평균(SD)	116,3(25.4)	131.40(26.23)	
계	538(100.0)	137(100.0)	

■ 소속기관별 평소 하는 일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평소 하는 일을 알아본 결과, 제 1순위로 하는 일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51.2%가 행정업무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아동의 숙제지도라고 응답하였다(x²=161.323, p<.001).

〈표 1-5〉 소속기관별 종사자의 평소 하는 일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숙제지도	58(11.5)	66(50.4)	161,323***
아동과의 대화	35(6.9)	6(4.6)	
급간식 준비	38(7.5)	14(10.7)	
아동활동지도	40(7.9)	26(19.8)	
학습보충지도	55(10.9)	15(11.5)	
행정업무	259(51.2)	4(3.1)	
아동상담	4(0.8)	0(0)	
부모상담	1(0.2)	0(0)	
지역네트워크	14(2.8)	0(0)	
기타	2(0.4)	0(0)	
계	506(79.4)	131(20.6)	

■ 소속기관별 아동 수

소속기관별 아동 수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54.1%가 20-29명의 아동을 돌본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에서는 58.7%가 20-29명의 아동을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명수는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29.276$, $p<.001$).

〈표 1-6〉 소속기관별 아동 수

단위: 명(%)

아동 수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1-9명	13(2.3)	3(2.2)	29.276***
10-19명	112(20.6)	32(23.2)	
20-29명	297(54.1)	81(58.7)	
30-39명	139(24.8)	17(12.3)	
40-49명	0(0)	0(0)	
50명이상	0(0)	5(3.6)	
평균	27.4	23.3	
계	1(100.0)	138(100.0)	

2) 소속기관별 협력 실태와 입장 비교

(1) 소속기관별 협력 실태

■ 소속기관별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 정도

소속기관별 상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에 비해 알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t=11.39$, $p<.001$).

〈표 1-7〉 소속기관별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 정도

	소속 기관별		t
	지역아동센터 (n=591) 평균(SD)	초등돌봄교실 (n=142) 평균(SD)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인식	3.32(.56)	2.56(.74)	11.39***

■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 정도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98.0%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응답자 중 49.6%만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성은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263.637$, $p<.001$).

〈표 1-8〉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필요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하다	581(98.0)	68(49.6)	263.637***
불필요하다	12(2.0)	69(50.4)	
계	593(100.0)	137(100.0)	

■ 소속기관별 협력의 필요 이유

소속 기관별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78.6%가 아동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5.3%가 아동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이고, 36.8%가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3.731$, $p<.001$).

〈표 1-9〉 소속기관별 협력 필요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87(15.2)	25(36.8)	93,731***
아동문제 상의를 위해	449(78.6)	24(35.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0(5.3)	11(16.2)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3(0.5)	0(0)	
기타	2(0.4)	8(11.8)	
계	593(100.0)	137(100.0)	

■ 소속기관별 현재 협력정도

소속기관별 현재의 협력정도(x2=107.663, p<.001)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68.39%가 긴밀히 협력하거나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34.72%가 긴밀히 협력하거나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협력을 위한 모임에 시설장(응답자의 69.3%임)이 직접 참여하지만, 초등돌봄교사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0〉 소속기관별 현재 협력정도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전혀 협력 없음	27(4.6)	44(31.9)	107,663***
협력이 거의 없음	160(27.1)	46(33.3)	
필요에 따라 협력함	336(56.9)	42(30.4)	
긴밀히 협력함	67(11.4)	6(4.3)	
계	590(100.0)	138(100.0)	

(2)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관의 응답 결과

■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 된 이유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 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경우 36.2%가 협력방법을 몰라서, 35.7%가 상대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협력이 안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경우, 55.2%가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 협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2.240$, $p<.001$).

〈표 1-11〉 소속기관별 협력이 안 된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7(13.6)	53(55.2)	72.240***
상대 기관의 거부로 인해서	71(35.7)	3(3.1)	
협력방법을 몰라서	72(36.2)	28(29.2)	
기타	29(14.6)	12(12.5)	
계	199(100.0)	96(100.0)	

■ 소속기관별 협력의 참여의사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참여 의사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53.0%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경우, 38.8%만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참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3.065$, $p<.001$).

〈표 1-12〉 소속기관별 협력의 참여의사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적극 참여	94(42.9)	3(3.1)	133.065***
참여	116(53.0)	38(38.8)	
참여 안함	2(0.9)	13(13.3)	
잘 모르겠음	7(3.2)	44(44.9)	
계	219(100.0)	98(100.0)	

■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내용

소속기관별 협력하고 싶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새로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초등돌봄교실과 협력하고 싶지만,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경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력하고자 하였다.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9.726$, $p<.001$).

〈표 1-13〉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내용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155(70.8)	22(27.5)	59.726***
프로그램 공유	37(16.9)	34(42.5)	
예산 공유	2(0.9)	0(0)	
정보 공유	14(6.4)	9(11.3)	
공간 공유	5(2.3)	2(2.5)	
외부강사 인력 공유	0(0)	4(5.0)	
아동 정보 공유	6(2.7)	6(7.5)	
종사자 처우 정보 공유	0(0)	2(2.5)	
기타	0(0)	1(1.3)	
계	219(100.0)	80(100.0)	

■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4.0%가 정기적인 협력회의 방식으로 협력하고자 했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40.5%가 필요시에만 협력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자 했다. 기관장간 즉,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학교장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24.3%가 응답하였으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1.2%였고 반면 종사자간의 협력에 대한 응답률은 초등돌봄교실이 더 높게 나타났다($\chi^2=59.976$, $p<.001$).

〈표 1-14〉 소속기관별 희망하는 협력방식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시만 협력	40(18.3)	34(40.5)	59.976***
정기적인 협력회의	96(44.0)	26(31.0)	
기관장간의 협력	53(24.3)	1(1.2)	
종사자간의 협력	9(4.1)	10(11.9)	
담임교사와의 협력	18(8.3)	3(3.6)	
교사 교육 및 연수	0(0)	4(4.8)	
원조해줄 기관을 통한 협력	1(0.5)	4(4.8)	
기타	1(0.5)	2(2.4)	
계	218(100.0)	84(100.0)	

■ 소속기관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

소속기관별 협력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41.3%가 상대기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여의치 않음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소속기관별 예상되는 협력 시 어려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²=47.768, p<.001).

〈표 1-15〉 소속기관별 협력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상대기관의 고압적 태도	88(41.3)	4(5.0)	47.768***
센터장의 부정적인 태도	11(5.2)	4(5.0)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여의치 않음	62(29.1)	42(52.5)	
이질적인 가치와 운영방식의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50(23.5)	22(27.5)	
기타	2(0.9)	8(10.0)	
계	213(100.0)	80(100.0)	

■ 소속기관별 협력 시 필요한 전제조건

소속기관별 협력 시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28.0%가 종사자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응답자의 27.3%는 상대기관의 특성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 시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3.366$, $p<.001$).

〈표 1-16〉 소속기관별 협력시 필요한 전제조건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협력이전에 종사자간의 친밀감 형성	60(28.0)	12(15.6)	73.366***
사전 정보 공유	37(17.3)	17(22.1)	
상대기관의 특성과 입장 이해	7(3.3)	21(27.3)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40(18.7)	1(1.3)	
풍부한 자원	10(4.7)	15(19.5)	
협력을 위한 관계자의 의지	59(27.6)	9(11.7)	
기타	1(0.5)	2(2.6)	
계	214(100.0)	77(100.0)	

(3) 현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응답 결과

■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하는 이유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30.4%가 협력 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계속 협력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6.8%가 협력 후 좋은 결과가 있어서라고 응답하였고, 24.4%가 관청의 적극적인 권유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981$, $p<.001$).

〈표 1-17〉 소속기관별 협력하는 이유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기관장의 의지	77(22.5)	7(17.1)	17,981***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84(24.6)	5(12.2)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서	17(5.0)	2(4.9)	
관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25(7.3)	10(24.4)	
협력 후 좋은 결과가 있어서	104(30.4)	11(26.8)	
학부모의 요청으로	4(1.2)	2(4.9)	
기타	31(9.1)	4(9.8)	
계	342(100.0)	41(100.0)	

■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 회수

소속기관별 상대기관과 협력한 횟수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68.6%가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초등돌봄교실 역시 44.7%도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협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협력횟수에 대한 소속기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37.269$, $p<.001$).

〈표 1-18〉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횟수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236(68.6)	17(44.7)	37,269***
주 1회	2(0.6)	1(2.6)	
월 1회	44(12.8)	1(2.6)	
분기별 1회	37(10.8)	5(13.2)	
기타	25(7.3)	14(36.8)	
계	199(100.0)	96(100.0)	

■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사안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하는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39.2%가 새로운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은 응답자의 22.5%가 새로운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 및 프로그램 공유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내용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7.908$, $p<.001$).

〈표 1-19〉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사안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136(39.2)	9(22.5)	97.908***
프로그램 공유	57(16.4)	9(22.5)	
예산 공유	7(2.0)	2(5.0)	
정보 공유	47(13.5)	1(2.5)	
공간 공유	14(4.0)	1(2.5)	
외부강사 인력 공유	2(0.6)	7(17.5)	
아동 정보 공유	77(22.2)	3(7.5)	
행사 공동 진행	3(0.9)	0(0)	
기타	4(1.2)	8(20.0)	
계	347(100.0)	40(100.0)	

■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 시 어려움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41.8%가 상대기관을 잘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42.4%가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i^2=59.554$, $p<.001$).

〈표 1-20〉 소속기관별 실제 협력시 어려움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상대기관의 고압적인 태도	48(16.2)	0(0)	59,554***
상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	23(7.7)	1(3.0)	
상대기관을 잘 몰라서	124(41.8)	2(6.1)	
기관장이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9(3.0)	0(0)	
많은 업무로 외부활동이 어려움	67(22.6)	14(42.4)	
이질적인 가치로 합의도출하기 어려움	12(4.0)	6(18.2)	
기타	14(4.7)	10(30.3)	
계	297(100.0)	33(100.0)	

■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62.9%는 새로운 대상 아동 발굴과 배치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경우 36.0%가 프로그램 공유를 원하고 있었다. 소속기관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58.408$, $p<.001$).

〈표 1-21〉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새로운 대상 아동발굴과 배치	349(62.9)	37(33.3)	58,408***
프로그램 공유	79(14.2)	40(36.0)	
예산 공유	12(2.2)	3(2.7)	
정보 공유	56(10.1)	12(10.8)	
공간 공유	23(4.1)	4(3.6)	
외부강사 인력 공유	12(2.2)	8(7.2)	
아동 정보 공유	22(4.0)	3(2.7)	
행사 공동 진행	1(0.2)	1(0.9)	
기타	1(0.2)	3(2.7)	
계	555(100.0)	111(100.0)	

■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

소속기관별 앞으로 상대기관과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41.8%가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바라고 있었지만,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33.6%가 필요한 사안에만 협력하고자 했다. 소속기관별 협력 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8.768$, $p<.001$).

〈표 1-22〉 소속기관별 앞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방식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필요한 사안에만 협력	61(12.6)	36(33.6)	78.768***
정기적인 협력회의	202(41.8)	23(21.5)	
기관장간의 협력	109(22.6)	8(7.5)	
실무자간의 협력	82(17.0)	15(14.0)	
교사교육 및 연수	6(1.2)	11(10.3)	
원조 기관과의 협력	20(4.1)	11(10.3)	
기타	3(0.6)	3(2.8)	
계	483(100.0)	107(100.0)	

■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점 부분

소속기관별 협력에 필요한 사안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응답자는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32.1%가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응답자의 27.5%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요사안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1.885$, $p<.001$).

〈표 1-23〉 소속기관별 협력을 위한 중점사안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종사자간의 친밀성 형성	113(20.5)	15(13.8)	61,885***
신뢰관계 형성	177(32.1)	26(23.9)	
서로에 대한 이해	137(24.9)	30(27.5)	
협력하게 하는 제도적 조치	36(6.5)	2(1.8)	
자원공동 이용	13(2.4)	18(16.5)	
관계자의 의지	75(13.6)	15(13.8)	
기타	0(0)	3(2.8)	
계	551(100.0)	109(100.0)	

■ 소속기관별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관계 입장

소속기관별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관계에 대한 입장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45.3%은 역할분담형으로 운영하고자 했고,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44.6%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기를 바랐다. 소속기관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4.250$, $p<.001$).

〈표 1-24〉 소속기관별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관계 입장

단위: 명(%)

입장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기존의 방식대로	125(22.4)	54(44.6)	34,250***
하나로 통합 운영	141(25.3)	9(7.4)	
역할분담형 운영	253(45.3)	53(43.8)	
기타	39(7.0)	5(4.1)	
계	219(100.0)	98(100.0)	

■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26.4%가 주간보호는 돌봄교실, 야간보호는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8.0%도 주간보호는 돌봄교실, 야간보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543$, $p<.001$).

〈표 1-25〉 소속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입장

단위: 명(%)

역할분담 방식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초등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 고학년과 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	126(24.7)	37(30.6)	15.543**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원칙	125(24.5)	14(11.6)	
초등돌봄교실은 일반아동,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적 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	67(13.1)	12(9.9)	
초등돌봄교실은 주간보호, 지역아동센터는 야간보호 중심	135(26.4)	46(38.0)	
역할분담하지 않는다	51(10.0)	9(7.4)	
기타	7(1.4)	3(2.5)	
계	511(100.0)	121(100.0)	

■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51.6%는 아동의 이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고, 초등돌봄교실의 32.7%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35.307$, $p<.001$).

〈표 1-26〉 소속기관별 오후 10시 야간보호에 대한 입장

단위: 명(%)

	소속기관		x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현실화하기 어렵다	40(7.2)	37(32.7)	135,307***
초등보육을 확대하자	47(8.5)	35(31.0)	
종사자의 처우에 악영향을 준다	132(23.8)	28(24.8)	
아동의 이동으로 우리 기관에 악영향을 준다	286(51.6)	13(11.5)	
기타	49(8.8)	0(0)	
계	554(100.0)	73(100.0)	

■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를 알아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협력에 대한 조건에 대한 평균값이 초등돌봄교실 응답자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7〉 소속기관별 협력에 대한 입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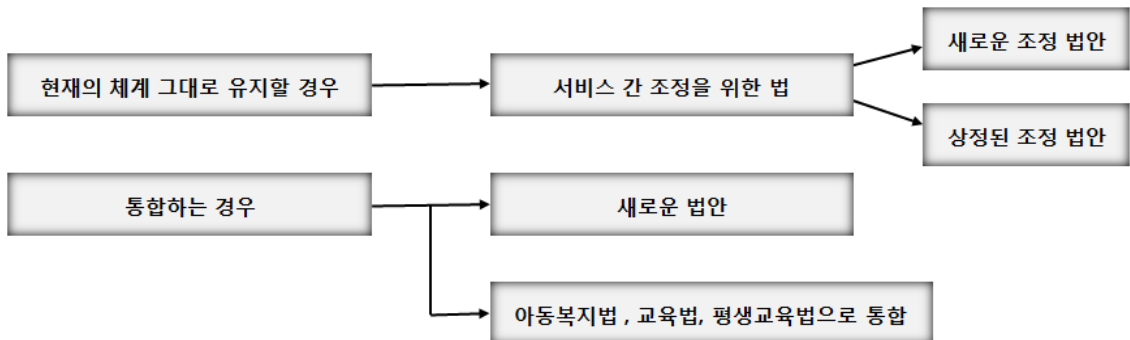
단위: 명(%)

협력을 위한 필요 조건	소속 기관별		t
	지역아동센터 (n=591) 평균(SD)	초등돌봄교실 (n=142) 평균(SD)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인식	3.32(.56)	2.56(.74)	11.39***
협력을 위한 친밀감필요	3.32(.69)	2.89(.94)	4.633***
신뢰감형성 필요	3.37(.66)	3.11(.94)	2.750**
협력의지 필요	3.25(.78)	3.00(.94)	2.545*
조정기관 필요	3.05(.85)	2.75(.98)	3.026**
제도 필요	3.19(.81)	2.74(.91)	4.806***
담당부처간의 협력 필요	3.43(.70)	3.05(.87)	4.244***
법안 제정 필요	3.33(.74)	2.80(1.01)	5.265***
처우 비슷할 필요	3.29(.80)	2.55(.98)	7.355***
자격조건 호환 필요	3.15(.82)	2.70(.98)	4.439***
예산 교류 필요	3.07(.83)	2.26(.94)	8.138***
프로그램 공유 필요	3.17(.74)	2.66(.99)	5.039***
외부강사 공유 필요	3.11(.82)	2.72(1.02)	3.771***

Ⅲ. 결 론

아동을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방임되는 아동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동이 홀로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경우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아가 아동의 즐거운 여가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안전하게 성장해나가기 위한 권리의 보장 등 권리실현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별적 복지적 관점에서 방과 후 방임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적 관점이 실현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한 각 영역별로 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각 서비스간의 협력을 위한 법안의 필요



(그림 1-1)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관련 법

법안은 현재의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통합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체계 구성을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2.1%이며 이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22.4%, 초등돌봄교사의 경우 44.6%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은 방과후서비스라는 보편성은 지니고 있으나, 각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로 통합될 때 다양성을 해치고 이는 아동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와 자칫 부서의 변화가 있을 때에 각 시설

혹은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의견을 존 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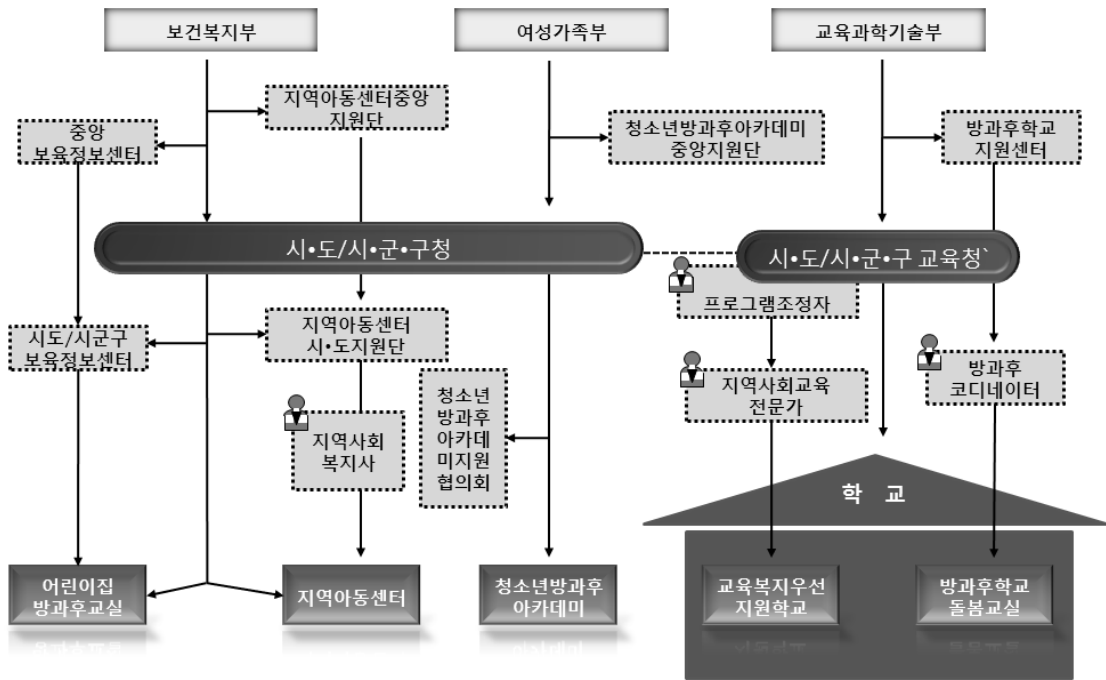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및 운영지침 등이 시설 운영의 기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아직 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교육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거법안이 다른 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사업까지 포함한 서비스 간 조정역할을 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아동의 방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2005년 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학령기 아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첫 시도가 있었고, 2008년 최영희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하였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어느 한 시설이나 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안들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 혹은 교육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들 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협의회는 새로운 조정 법안을 마련하거나 이미 상정되어 있는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법안은 각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위원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학령기 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계획을 세우는 의무를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전담부처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는 각 돌봄서비스 시설 간 예산을 지자체 수준에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

2. 전달체계의 개선

아동을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여전히 통계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발굴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이 밀집되어 있고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갈등이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 대상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



〈그림 1-2〉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에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 서비스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문을 닫는 지역아동센터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에 비해 인프라는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새로운 시설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든 돌봄교실이든 하나의 시설이 마을의 전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유형의 방과후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필요하며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며, 아직 배치되지 않은 아동을 위해 새로운 시설(지역아동센터든 초등돌봄이든)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기능을 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양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도가 낮은 것 역시 전달체계 문제로 보아야 한다.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아동에게는 언제라도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기초인 선별성의 원칙에 따라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가정은 아니나,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예: 맞벌이 가정의 자녀)은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가정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증가(개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의 증가폭보다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의 총계는 지속적인 증가를 해왔음)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 수준의 개입 혹은 관리는 평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의 책임이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체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위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합의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성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네트워크의 구축(전달체계 포함)은 개별 시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나아가 지자체, 정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에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 가정이나 방임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 뿐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초기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진화한 것과 같이 방과후서비스 또한 욕구가 있는 모든 아동과 부모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초입기능이 필요하다.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모집하고 있다. 이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누락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달체계 속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시설에 배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중심적 전달체계의 구축해야 한다. 정책 수행의 경제적 효율성, 투표권이 있는 성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아동정책의 목표가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인중심의 목표가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장, 교육감의 임기 동안 운영되는 일시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전달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분적 구조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마다의 이 전달체계간 협력이 시설간의 협력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적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복지전달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 역시 어렵다. 따라서 행정전달체계는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동의 욕구사정과 이에 대한 서비스의 연결,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행정 서비스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아동복지 혹은 가족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의 경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위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행정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림스타트가 전달체계 속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드림스타트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드림스타트가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초입기능을 하는 곳인지, 혹은 전문사례관리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는 교육청이라는 전문행정전달체계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 실행단계에서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를 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등돌봄 자체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부차적인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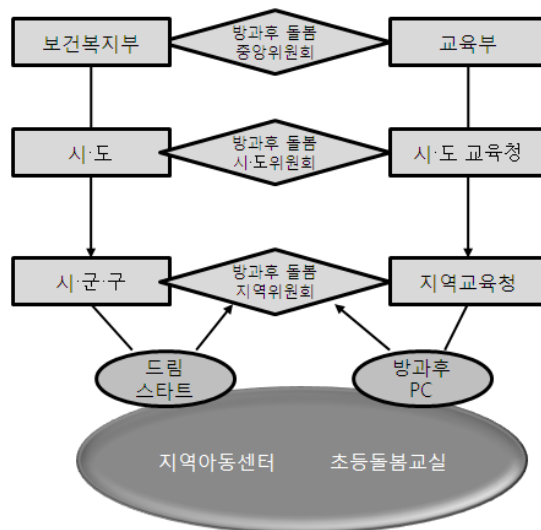
무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서비스 지원하는 드림스타트(혹은 지원단)와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에서의 초등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담하는 정부 부처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은 모두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나 지원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용 아동에 대한 국가의 차별이며, 헌법은 물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부처와 관계없이 지자체 수준에서 협력을 통해 예산이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전담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예: 방과후서비스 특별위원회 등)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다만, 중앙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실무단을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단(가칭)을 두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학교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지원단, 프로젝트조정자가 서비스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3〉 방과후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안

중앙의 방과후서비스 중앙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담당부처간의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초등돌봄 교사들의 보수교육에서 학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연수하도록 하고, 학교 교사들의 연수과정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시·도 차원에서는 시·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과의 업무 협약 체결하거나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방과후서비스 담당자는 물론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과 교육청의 방과후 담당 장학관이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방과후서비스 관련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이다. 시·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 및 실행의 책임을 진다.

시·군·구 차원에서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위원회는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교육청과 드림스타트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다. 기초지자체 수준의 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시설의 수와 안배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초입 기능 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및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 시설의 확대 필요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는 10,830,127명이며 이중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매일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즉,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1,107,330명이다 (보건복지부, 2009).

〈표 1-28〉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현황

(2009년 12월 기준, 단위 : 명)

학령기 아동인구	돌봄 필요한 아동인구 ²⁾
10,830,127 ³⁾	1,107,330 ⁴⁾ (100,0%)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보육시설, 종일돌봄교실 등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등 방과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246,498명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22.3%에 불과하며 77.7%의 아동이 가정과 사회 모두로부터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 양은 방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방임 아동에 대한 성학대 사건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29〉 방과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보호 현황

아동보호현황	지역 아동센터 ⁵⁾ (3,690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⁶⁾ (178개소)	방과후 보육 ⁷⁾ (554개소)	초등 ⁸⁾ 돌봄 교실 (6,200교실)	소 계	미보호 아동 인구
명(%)	107,171 (9.7%)	8,200 (0.7%)	7,114 (0.6%)	124,013 (11.2%)	246,498 (22.3%)	860,832 (77.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

아직 미보호 상태에 있는 86만 여 명의 아동이 방과후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교실 당 20명의 아동을 한 반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방과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서비스 시설 및 기관을 제외하고 4만 3천 개의 지역아동센터(방과후교실)이 필요하다. 이 때 한 센터(교실) 당 월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연간 2조 6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아동들이 방임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후에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모든 아동까지 방과후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나가야 할 것이다.

2)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거의 매일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있는 경우의 아동 수임.

3)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5)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6) 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백서.

7)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8) 김홍원(2011). 2011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교육개발원.

4.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이슈

가. 역할분담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할분담하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운영시간의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은 대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야간돌봄을 초등돌봄교실이 주간돌봄을 하는 것으로, 아동연령의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은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고학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또 아동의 가정 경제적 수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빈곤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 역할분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지역아동센터가 45.3%, 초등돌봄교사들은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분담을 고려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이 정책적으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상 아동을 놓고 현장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이 상황에서 어느 한 시설이나 기관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전히 방임되고 있는 아동이 86만 명이나 된다. 방임되고 있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상당히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면,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이 학교나 가정에서 책임 있는 성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있어야 하는 곳은 학교와 같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비구조화 된 환경이어야 한다. 아동들은 방과 후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일정한 학년이 지나면 다른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거나,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정 형편에 의한 역할분담을 하게 될 때에는 빈곤아동의 낙인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욕구가 역할 분담이고, 양 협의회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칫 협의회와 현장이 서로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장의 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나. 협력관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친밀감(28.0%), 관계자의 의지(27.6%), 제도적 장치(18.7%)라고 응답하였고, 초등돌봄교사들은 상대기관의 특성이나 입장 이해하기(27.3%), 사전정보공유(22.1%), 풍부한 자원 필요(19.5%)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나 초등돌봄교사들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친밀감을 갖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협력관계를 위한 정책의 실현과정이 자칫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어서는 그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욕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한 시간부터 친밀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다만, 저절로 이러한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워크숍이나 연수 과정에서 상대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 발표 2

방과후 체제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여현진(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장)

주제발표 2

방과후 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여현진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단 단장

I. 들어가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각 부처간에서 실시되어 온 돌봄서비스는 그 성과가 인정되는 부분이 상당 수 있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동들이 존재하며,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방안을 내어 놓았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4,036개소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의 핵심 축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양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 밀착형 전문아동복지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던 터라 이 연계체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만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80년대 빈곤운동에 뿌리를 두고 공부방 형태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된 후, 현재 전국 4,036개소(2013년 6월 기준), 109,25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역에는 현재 청송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59개의 지역아동센터에 6,53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55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호영역과,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지도분야인 교육영역, 체험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의 문화영역, 가족지원이나 상담 등의 정서지원영역, 지역사회연계라는 5대 영역으로 전인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원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으며 신규로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전문성을 검증한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신고제에 의한 개인시설 난립을 억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전문적인 아동복지시설로서의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운영의 체계화, 서비스의 기초선 제공 등을 위해 2009년과 2010년 지역아동센터평가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3년의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2011년 ~ 14년의 평가가 한 사이클이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 수정 보완된 지표로 새로운 사이클의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단은 2007년 사회적일자리창출의 일환인 아동복지교사파견⁹⁾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센터를 모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의 올바른 성장, 교육,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광역단위의 시도지원단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17개 시도지원단이 광역지자체의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 지고 있으며 본 지원단도 2011년부터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II.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계 추진 과정

2013년 기준으로 부처별 돌봄서비스 제공현황¹⁰⁾을 보면,

9)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여 기초학습, 영어, 독서지도, 예체능분야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파견교사 지원사업

10) 2013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운영 매뉴얼 참고

구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동돌봄서비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근거법	아동복지법 제 52조	초중등교육과정 고시 2013-7호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아동돌봄지원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자녀(저학년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 차상위계층(초등 4~중2)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운영주체	지역아동센터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운영방식	시군구에 등록된 법인, 개인 등	시도교육청 계획, 지도, 아래학교에서 운영	지자체가 운영	지자체 등 운영
지원내용	보호, 학습,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 등	돌봄, 숙제지도, 특기지도 등	체험활동,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귀가차량 등	보육, 놀이, 간식, 등학교(원) 동행 등 돌봄
지원시설수	4,036개소	7,395교실	200개소	215개 기관
수혜아동	109천명	159천명	8천 명	60천 명
지원형태	전액지원	수익자부담 저소득층 무료참여(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원대상결정)	지원형:전액지원 일반형:수익자부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본인부담 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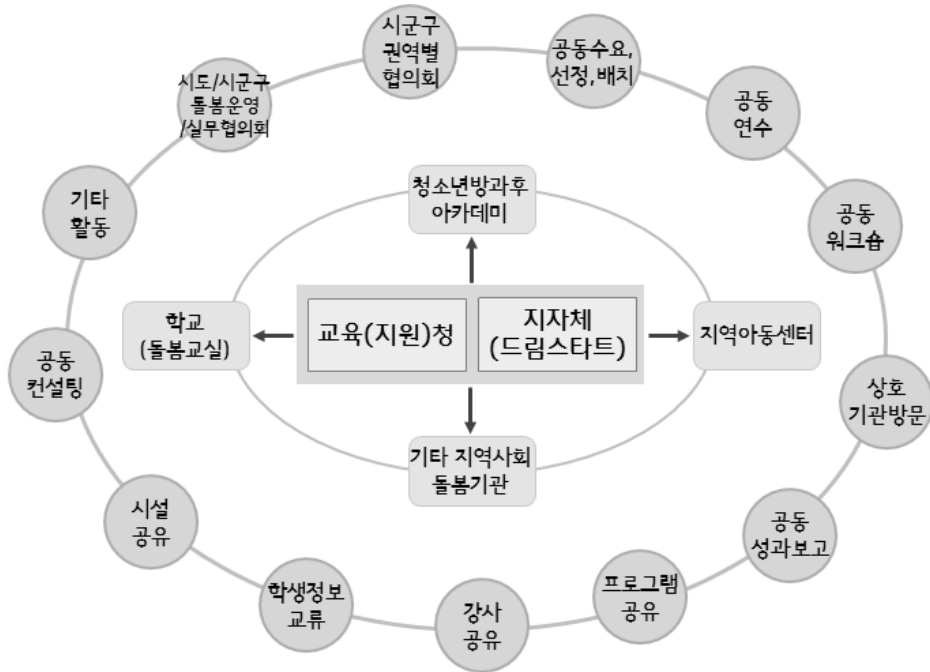
1. 연계 기본 방향

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학부모·학생에게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하고자 하고자 한다.

나.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한 협의 및 돌봄기관의 자발적 참여

지역돌봄기관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돌봄협의체(교육지원청,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연계 방안 협의하며, 학교 및 지역돌봄기관은 자발적인 참여 의지로 상호 간 돌봄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돌봄네트워크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2-1〉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다. 중복 이용 방지

동일 시간대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2개 이상의 돌봄기관 등록 및 이용은 허용하지 않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라. 안전 확보

연계 기관으로 이동, 연계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내 안전관리, 귀가 안전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전제로 연계를 추진할 수 있으며, 돌봄기관 간 업무 협약 및 계약 추진 시, 보험 등 학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화하고, 항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 초등방과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유형

연계유형에는 학교초등돌봄과 지역아동센터 간, 학교초등돌봄과 청소년아카데미 간,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 간 연계유형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계유형은 학교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유형이다.

학교 초등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연계유형의 형태를 보면,

- 1)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 연계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 강사, 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2) 시간대별 연계는 돌봄기관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희망하는 돌봄기관에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위탁운영형태의 연계유형으로 학교의 초등방과후교실을 지역돌봄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별 연계유형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정원, 기본운영시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준을 고려하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계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을 기본운영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필수 운영시간은 학기 중 14:00~19:00, 방학중 및 공휴일 12:00~17:00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의 표는 학교에서 오후돌봄을 받고 이후 시간 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로,

		〈신고정원〉	
		내	외(초과)
^ 기 본 운 영 시 간 ↓	내	A 유형 (프로그램비 이외 추가지원 없음)	
	외 (초과)	B 유형 (아동인원별 지원)	C 유형 (별도 사업 지원)

A유형은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정원 및 기본운영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이용 후, 3시간 이상 돌봄을 받아야 할 아동을 그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시간 내, 신고정원 범위 내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운영비의 추가 지원은 없다. 다만, 필요시 해당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비용을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다.

B유형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시간 이후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기본운영시간 이외에 추가로 저녁돌봄을 실시하고자 하여, 그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정원 범위 내에서 저녁돌봄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기본운영시간 외 저녁돌봄에 대한 연계아동수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계시간 및 아동수에 따라 기본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차등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역돌봄기관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 될 수 있다.

〈추가 저녁돌봄 운영비용 산출내역(예시)〉

분류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추가운영시간 (종료 22:00기준)	아동연계시간	연계 아동수	추가운영비용 (만원)
예시	10:00~19:00	2시간 이상	3시간이상 최대5시간	7인 미만	별도협의
	12:00~20:00			7인 이상	별도협의

* 기본운영비 : '① 야근수당 + ② 기타수용비(귀가지도를 위한 차량운영비 포함)로 구성

** 기본운영비(①+②) + ③ 프로그램비로 구성

*** 7인 이상일 경우,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하도록 추가 지원

그러나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저녁돌봄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저녁돌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야간보호를 위해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저녁돌봄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보건복지부의 저녁돌봄 특수목적형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다.

C유형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시간 종료 후 초등돌봄교실을 위탁받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시간 이후부터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식과는 별도로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아동은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은 후 지역아동센터의 저녁돌봄 시간에 해당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여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이 19:00인 경우, 이용아동은 19:00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은 후 19:00이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저녁돌봄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학교장이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본운영시간의 정원과 별개로 저녁돌봄을 위한 정원으로 운영하되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아동복지법, 1인당 전용면적 3.3㎡)을 준수하여야 한다.

추가예산지원은 저녁돌봄을 연계하는 학교의 저녁돌봄 운영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위탁운영형태의 연계유형의 경우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 및 저녁돌봄을 모두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초등돌봄교실 종사자 자격기준 등은 초등돌봄교실의 모든 운영기준에 준하도록 하며 위탁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통과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주체가 법인, 개인 모두 가능)로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상호 위탁 가능한 기관을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통해 위탁운영 의사가 있는 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을 각각 파악한 후 상호 위탁 가능한 지역돌봄기관 목록을 정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위한 별도종사자(관리책임자)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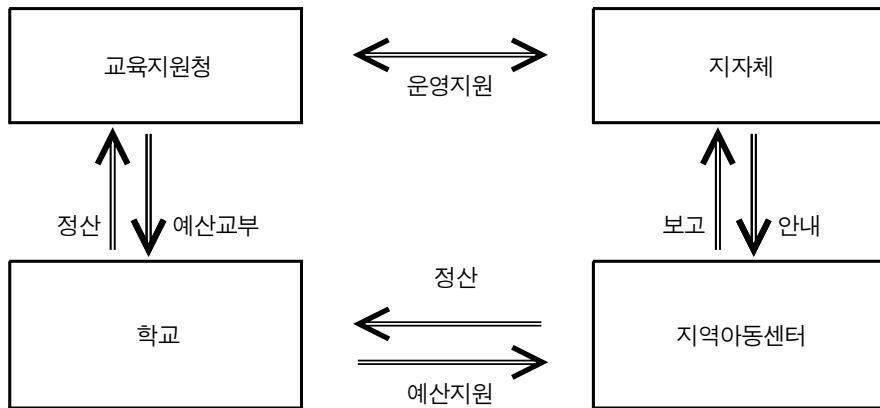
학교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받은 위탁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의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사업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돌봄운영예산을 교부하고 학교는 위탁 및 연계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상호 업무위탁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 사업을 보고하면 된다.



※ 교육청 및 학교 회계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예산 지원, 정산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그림 2-2〉 돌봄운영에 따른 업무 및 예산 흐름도 예시

Ⅲ.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지역적 실태(경상북도를 중심으로)

2013년 9월경 부처통합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계구축이 발표되고 하반기부터 각 부처별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시군구단위의 돌봄협의체 구축을 시작으로 수요조사실시에 대한 준비가 함께 진행 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3년 11월중으로 돌봄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군에서는 12월 중순까지도 돌봄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지지 않다가 12월 말경 급하게 구성되기도 하였다.

각 시군의 돌봄운영협의회는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지며, 지역아동센터 소속으로는 각 시군 협의회장을 맡은 회장 또는 임원단에서 참여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돌봄운영협의회 뿐 아니라, 돌봄운영 실무협의회가 추가 구성하기도 하였으며 이 실무추진팀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역협의회 임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포항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서 실무추진팀이 같이 활동중이다.

또한 광역단위로는 돌봄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소속으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경북지부장인 구룡포지역아동센터장 이종화 지부장,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단 여현진 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201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각 시군별로 돌봄운영협의회 1차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교육관계자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알리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으며, 이후 각 개개 지역별로 세미나와 워크숍 형태의 모임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A시의 경우, 대부분의 돌봄운영협의회 1차 간담회가 2013년 12월에 진행된 반면 11월 19일에 1차 간담회를 가지고 운영실무협의회에서 수요조사를 위한 돌봄안내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여 공동수요조사에 대해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의 진행사항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돌봄 안내지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로 공동수요조사가 실시되고 말았다. 이후 2014년 4월까지 돌봄운영협의회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시군에서 이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B시의 경우는, 공동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시담당자가 함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 1:1 조율을 통해 기존 돌봄서비스기관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아동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소통하며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B시의 경우,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애초에 제안하였고, 학교장들 또한 방과후돌봄은 교육적 기능보다는 복지의 영역에서 보아야한다는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터라 원활한 진행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운영협의회 지역아동센터소속위원은 말하고 있다.

C시의 경우는, 2014년 3월 1일 교육청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전 담당자들과 논의되었던 저녁돌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한 담당하며 학교돌봄에서는 저녁돌봄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항에 대해 현재 각 학교에서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들어 광역단위의 돌봄지원협의회는 아직 회의나 모임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시군 돌봄운영협의회 또한 22개 시군 중 10개미만의 일부 시군에서만 돌

봄운영협의회 회의가 1~2회 진행되었다고 한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시로 돌봄운영협의회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변화정도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돌봄교실의 추가 증설과 개보수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많은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등원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C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들이 2개 학교아동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1개 초등학교는 기존 돌봄교실을 2개 교실에서 6개 교실로 증설하였고, 또 다른 학교아동들은 4시 30분 이후에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추가 증설은 기존교실에서 1~2개 교실이 더 증설이 되는 추세로 나타났고 증설이 되지 않더라도 개보수 또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추가예산지원으로 가능한 초등돌봄교실의 변화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추가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적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물리적 환경적인 면에서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지, 지원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간대별 연계유형 가운데 오후돌봄은 학교에서 저녁돌봄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도 정원 내 아동이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업무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종사자 피로감도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과 비교해 아동수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아동들의 등원시간이 늦어지는 부분은 많은 센터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라 말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추가 등록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초등돌봄의 원래 대상인 1~2학년 중심의 돌봄교실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

또한 공동수요조사 후 아동배정에 있어서 학교 밖 돌봄을 우선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IV. 나가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연계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여 지역의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 해 왔지만 아직 까지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계의 좋은 모델을 찾기엔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처 간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계구축이 마련되어 이미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진정한 연계 및 통합은, 돌봄의 대상, 프로그램의 질, 종사자의 처우, 시간별 돌봄에 대한 기준, 시설 지원 등에 있어 단일한 원칙을 가지고 아동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학교 안과 학교 밖 돌봄 기관이 모두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종 합 토 론

노성향(대구대 교수)

박진현(예따라기지역아동센터장)

조은경(성서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양유진(대구남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PM)

토론 1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바라본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계

노성향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연령별 고용률 추이가 M자형 커브로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지만, 30대에는 최저점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방과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유사성 때문에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교육과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부처통합 방과후돌봄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MOU)을 하였고, 중앙·시·군에는 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은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한다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오랫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영유아보육이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 운영된 것처럼, 아동돌봄 또한 아동권리보장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적 관점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돌봄을 민간차원에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아동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모여, 연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협력과 전달체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

한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돌봄정책을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부터 기관 간 소통은 없었고, 정책진행 과정 또한 신중하다기보다는 다소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초등돌봄 교실의 갑작스런 양적확대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담당할 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늘어난 교실에 아동정원을 채우기 위해 아동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협력의 방법을 초등학교가 주도하고 지역의 다른 기관은 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등 다양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통합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진행과정에서도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 정책으로 2014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의 욕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야간까지 아동이 학교에 있고 싶을지, 한번쯤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생각해 본다.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돌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아동돌봄은 아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유형,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동이 사는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등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도시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방과 후 시간동안 돌봄을 제공해 주고, 다양한 학습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구되고, 농어촌 지역, 도시 빈민지역의 한부모가족, 저소득 맞벌이가족, 조손가족의 아동은 이러한 기능에 양육자로서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동돌봄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여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면 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방과후돌봄 정책협의회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고,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파악한 뒤, 양적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하고,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기존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돌봄교실에 대한 기반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므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을 발굴한 뒤 적절한 기관에 연계하는 일을 담당하고, 부모가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과후 통합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복지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을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봐야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돌봄교실의 보조적 기관으로 생

각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간과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초·중·고등학교의 전학년 확대라는 사업성과에 초점을 두고 돌봄정책이 진행된다면 아동의 욕구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동일한 연령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이용아동, 교사자격, 교사처우, 운영철학,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동일 대상을 돌본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돌봄 현장에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돌봄을 위해 흩어져있던 관련부처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아동돌봄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방과후 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돌봄은 아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유형,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동이 사는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반드시 아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돌봄기관간 연계를 위해서는 돌봄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처우가 통일되어야 되고 각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별 기관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과후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밀착형 포괄적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마을의 공간을 매입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 선진국의 아동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배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평등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고 한다. 돌봄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토론 2

방과후서비스간 협력체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입장

박진현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장

I. 들어가며

사각지대에 있는 나 홀로 아동들의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난 2012년 “부처통합 방과 후 돌봄 서비스”정책은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그 시행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동 청소년 돌봄의 협력적 해결 방안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특히 새 정부의 ‘초등무상돌봄 확대정책’으로 더욱더 방과 후 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발표1 “방과후서비스간 협력체계에 대한 담당 종사자들의 의견 조사결과”와 주제발표2 “방과후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아동 방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II. 주제 발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입장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자의 입장은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아니라,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의 경험과 현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의 의견을 전제로 한 개인적인

입장임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부처통합 방과후돌봄서비스정책”과 “초등돌봄 확대정책”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의 서비스간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는 바이다. 이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아동 돌봄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다.

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간의 다른 입장이다. 주제발표의 설문조사에서도 들어나듯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간의 아동 돌봄에 대한 시각차를 볼 수 있다. 방임되는 아동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면, 방임아동은 교육의 기능보다는 돌봄의 기능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각지대 돌봄의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 같은 방과 후 서비스의 개념이지만 교육적 시각과 복지적 시각의 견해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특성을 살린 협력의 관계란 인식을 가질 때 서로 이해와 동질감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라면 무조건 빈곤한 아이들만 가는 복지시설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소규모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부처의 평가를 받으며,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과 교육적인 면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 인성지도 및 자존감 형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기에 질 높은 서비스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므로 각 부처에서는 서로 상생해 갈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는, 이용방지 규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교에서의 초등 오후 돌봄은 17:00까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초등 돌봄의 필수 운영시간은 19:00까지이고, 또한 아동이 3시간 이상의 이용규정이 따르며,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주어진 신고 정원의 아동수가 있다. 초등오후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그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이용하려면 아동이 17:00~19:00까지의 이용을 이러한 제도상의 규제가 막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보면 이용아동도 아닌 상황에서 아동을 돌보다가 행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에 초과한 아동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아동 보호에 제공 할 서비스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이용아동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도 어렵고 5시 이 후에 오는 아동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이중지원이란 명목아래 별도로 나오는 프로그램비도 없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예) 만약 이 시간대에 아동이 1~2명밖에 없다면?, 또한 학년의 차이가 크다면? 다른 문제는 이 2시간의 이용은 다른 프로그램비의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초등돌봄에서 협의하여 프로그램비가 지원 가능하다고 하지만 소수가 이용한다면,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만약 3시간 이상 저녁돌봄으로 연계가 되더라도 연계아동수별 추가지원의 문제도 소수가 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아동은 5시 이후부터는 사각지대로 방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아동의 입장에서 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고자 한다.

얼마 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이 끝나 집으로 가야 할 아이가 직장에 가신 어머니 올 시간이 되지 않아 집에 혼자 있기가 싫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실로, 혹은 친구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가 문구점에서 슬쩍, 슈퍼마켓에서 슬쩍, CCTV에 찍혀 혼이 나는 일이 있었다. 또한 거리에서 형들에게 용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아이는 초등돌봄을 마치고 부모님이 집에 오실 나머지 시간을 센터에 부탁을 하였으나, 제도상 규제에 걸려 받지 못한 아이였다는 어느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가정은 초등1학년의 오빠가 어린이집 다니는 동생을 돌봐야 하기에 돌봄교실도 지역아동센터도 오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이 상황은 어린이집 마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이중지원이라 갈 수가 없으며, 어린이집은 기본 돌보는 시간이 초과하면, 부모가 초과비용을 내어야 하기에 결국 한창 돌봄을 받아야 하는 초등1년인 오빠가 오히려 동생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착잡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어찌 그 아이 뿐일까 어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한창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규제에 묶여 상처를 받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상황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종사자간의 소통의 문제이다.

주제발표의 종사자 의견의 설문조사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협력관계의 간절성이 있지만 초등 돌봄은 협력관계의 간절성이 약하다. (주제발표1,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응답-지역아동센터(98%), 초등돌봄(49.6%)/ 협력이 안 되는 이유 - 지역아동센터(상대기관의 거부나-35.7%, 협력방법을 몰라-36.2%), 초등돌봄(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55.2%)/ 협력방식-지역아동센터(정기적-44%), 초등돌봄(필요시만-40.5%)/ 협력내용-지역아동센터(아동 발굴-70.8%), 초등 돌봄(프로그램공유-42.5%))

종사자는 실제적인 아동의 돌봄 책임자이다. 서로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없이는 연계를 통한 아동 돌봄은 있을 수가 없다.

예) 2013년 각 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토요 돌봄으로 각 센터별 2~3개 초등학교와 MOU계약을 맺었지만 실제적인 아동연계는 대구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10%에 불과했으며, 방과후서비스는 학교 연계로 인한 아동 발굴 역시 10%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각 종사자들 간의 주기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함께 교류하며, 아동들에게 더 좋은 사랑과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는, 역할분담 대안문제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주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고학년 야간돌봄으로의 역할분담이다. 이 부분 역시도 하나의 임시 대안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돌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사각지대의 아동들은 가정상황에 따라 돌봄의 필요한 욕구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의 돌봄으로는 학교 방과 후의 연장선에서 지도가 장점인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개별적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더 적합함이 있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개개인 별로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동의 욕구에 따라 선택의 기회를 주기위해 초등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진 돌봄을 하기 위하여 서로 교류하고 적극적인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Ⅲ. 나가며

여전히 사각지대의 아동 돌봄의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간 유치경쟁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현재의 모습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발굴의 어려움으로 운영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바라보면서 문제와 협력의 중요성은 공감하되 실질적인 협력단계까지 가기위한 초등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이해와 교감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부처의 아동돌봄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 협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각자의 입장에만 생각하고 규정에만 묶여서 정작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다면 새 정부에서 내어 놓은 이 좋은 제도는 오히려 아동들을 사각지대로 내 모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간 방과후서비스는 먼저는 각 부처에서 서로 협력이 이뤄져 아동들에게 피해가 오는 규제는 서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진정된 돌봄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을 먼저 생각 하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지라도 지속적인 사각지대의 아동발굴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감대를 위한 시도가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 3

방과후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초등돌봄 입장

조은경
대구성서초등학교 초등돌봄전담사

I. 들어가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초등 무상돌봄이 적용확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초등돌봄교실 외의 유사 기관들의 존폐여부 즉, 아동의 자연 감소에 따른 운영의 애로사항과 형평성 문제 이외에도 아동 입장에서 아동 권리문제,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 중심 정책(연계)이 되어야 함은 익히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직접 운용하고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배제한 정책(연계) 또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관련 실무자 대표기관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사)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의 '방과 후 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담당 종사자들의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유사기관 간의 이해를 도모한 연계 방안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며,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여긴다.

다만, 연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있어서 수직(상하)관계 또는 흡수(통합)관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초등돌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로서 방과 후 서비스 간 협력체계에 대한 초등돌봄의 입장에 대해 사심 없이 논하고자 한다.

II. 초등돌봄 운영 현황

주제 발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중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음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에 대한 운영 현황을 간략히 언급한다.

1. 초등돌봄 무상확대 정책 시행 원년

2014학년부터 초등 1·2학년은 시작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초등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들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하면, 밤10시까지 무료로 초등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전면 시행되어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2015년엔 3~4학년까지, 2016년엔 5~6학년까지 확대 시행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검용교실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201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4. 3.)

구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학교 (개)	교실 (실)	이용 학생 (명)	학교 (개)	교실 (실)	이용 학생 (명)
서울	556	1,356	27,737	480	499	3,593
부산	299	525	10,497	149	162	1,860
대구	213	441	7,958	34	34	308
인천	249	474	8,953	202	205	1,289
광주	149	327	6,344	17	17	186
대전	146	343	7,133	55	61	759
울산	120	223	5,161	88	88	588
세종	26	61	919	9	9	53
경기	1,193	2,678	60,764	331	372	5,620
강원	357	460	8,885	61	63	718
충북	259	346	8,195	69	84	840
충남	421	550	12,301	67	73	635
전북	411	680	13,992	97	113	1,822
전남	417	661	10,727	121	123	1,399
경북	492	640	12,739	63	63	624
경남	499	770	16,989	76	79	1,014
제주	103	167	3,572	17	18	187
계	5,910	10,702	222,866	1,936	2,063	21,495

※ 출처 : 교육부(2014), 4. 9일자 보도자료 : 초등돌봄교실 추가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방임되는 아동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동이 홀로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지내는 경우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가정의 여건상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무료로 참여하여 정규수업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면 모든 학생을 학교가 돌 봐 준다는 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부모역할의 부재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 커다란 건물에서 밤늦도록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자녀로의 낙인 우려, 관리자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담당자의 자기개발 및 가정생활 영위 부담감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원하는 학생 모두를 그것도 밤 10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본다는 현 정부 정책은 공교육 안에서 학부모의 의견과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등의 접근으로 출발 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명만 있어도 학교 안에서 돌봄을 운영 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 할 수 없는 일이다.

초등학교의 돌봄은 보호만이 아니라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다. 방과후학교에 속해 있지만 특기적성과는 그 성격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 운영개요

운영유형	운영 시간	장소	대상	수용 인원	비용부담	비고
오후 돌봄	13:00 ~17:00	돌봄전용 교실, 겸용교실 (2곳)	1, 2학년 중 희망자 전원	45	간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 대상자 무료)	방학 중, 자율휴업일 포함
저녁 돌봄	17:00 ~22:00	돌봄전용 교실	오후돌봄참여자 중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학생	20	저녁 급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 대상자 무료)	학기 중

※ 출처 : 교육부(201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나. 운영 조직 및 담당

- 1)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 돌봄교실 주요 운영 사항 협의체
- 2) 돌봄교실 협의회 : 교감, 담당부장, 돌봄전담사, 학부모 2,3명이 참여하여, 간식과 식사 메뉴, 프로그램 선정 등 세부사항 협의 및 운영 감독 관리 역할

다. 운영시간

- 오후 돌봄은 주5일 13:00~17:00
- 저녁 돌봄은 주5일 17:00~22:00(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토요일 돌봄은 09:00~13:00
- 방학 중에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 09:00~17:00(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만 제외

라. 학생선정 및 학급 편성

오후 돌봄 프로그램(예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00 ~14:10	인사나누기, 출석확인 개별과제활동	정규수업/휴식	정규수업/휴식	인사나누기, 출석확인	인사나누기, 출석확인, 개별과제활동
14:10~15: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개인선택/유료)				
	돌봄교실 전체 활동 (반별 선택/무료)				
15:10~16:00	영어놀이 (영어전담강사)	신체놀이 (스포츠강사)	영어놀이 (원어민강사)	신체놀이 (스포츠강사)	심성놀이 (상담사)
16:00~16:20	간식시간 및 휴식 / 자유시간				
16:20~17:00	개인별 활동, 귀가 준비 및 귀가, 독서활동(선택적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과제 해결하기, 단체프로그램 운영				

※ 출처 : 교육부(201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마. 방학 중 프로그램

- 1) 주중 프로그램의 시간을 오전으로 이동하여 운영
- 2)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밖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돌봄전담사나 담당교사 등 책임자가 동행하도록 기획·운영(별도계획으로 운영)

Ⅲ. 범부처 연계 사례 및 초등돌봄 입장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부처마다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면으로 중복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장의 사례 및 주제 발제에 따른 본 토론자의 초등돌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제반사항에의 협력이 없거나, 수요자 중심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실무자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연계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둔다.

1. 범부처 연계 돌봄 서비스의 현장 사례

부처통합 방과후돌봄서비스 정책의 진단과 성공적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2013. 10. 16. 수.)의 기초발제에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연구팀장은 부처별로 통합되지 않고 분절적·단편적인 돌봄사업의 추진으로 돌봄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우선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계·협력 강화 필요하다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4년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 협력 방안 연구’가 (사)초등교육과 (사)전지협 공동연구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아카데미와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

로 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게 현실이고 각각의 기관마다 운영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2.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가. 대구성서초등학교와 희락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10월 9일 MOU체결을 통하여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많은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지역센터와 돌봄의 협력은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신뢰가 형성 되어야 하며 수시로 협의를 통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가족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며 가족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안정된 돌봄을 위해 초등돌봄의 운영 시간은 저녁 7시까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토론자의 의견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주변에 익숙하지 않거니와 이동 할 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므로 초등학교 내에서 오후 및 저녁 돌봄을 실시하고, 고학년은 학교주변의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주제발표1의 내용과 유사한 일부분이다.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말 프로그램 등 체험 활동에 초등돌봄교실 학생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주제 발제에 따른 초등돌봄 입장

먼저, 근거법안이 마련됨에 있어 기관마다 다른 자격기준과 운영시간 그리고 목적하는 바의 방향 간 차이점을 인식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려 경쟁이 아닌 협력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

주제발표1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많고 또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서로 간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지역아동센터

가 야간돌봄을 초등돌봄교실이 주간돌봄을 하는 것으로, 아동연령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은 초등돌봄교실이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고학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의 특성을 이해한 좋은 협력과 연계 방안이라 여겨진다.

덧붙여, 주제 발제에 따른 본 토론자의 의견 중 문제로 보이는 부분을 재고해보고자 하며 보다 더 심도 있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을 또 기대해 본다.

가. 협력·연계에 따른 종사자의 형평성 문제

주제발표2의 협력모델 실태에 따르면,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학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장이 중심이 된 돌봄협의체의 운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직접 담당 운용하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의견이 배제되어 탁상공론이 되어 질 우려와 지속성과 일관성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상호 협력 및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가 매우 낮은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나. 연계유형의 문제

주제발표2의 C 연계유형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의 위탁운영이라 단언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자 의견과 아동의 입장이 배제된 위험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협력 및 연계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통합 및 흡수 사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영의 사례는, 서울시 초등돌봄의 경우, 1996년 초등돌봄 운영이 시작된 이래 2007년 3월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탁운영 사례가 있었지만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시간대별로 다르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소요 등의 개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운영에의 혼선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에 따른 일관성 없는 운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낸 다양한 위탁운영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2007년 4월 1일자로 총 43개실의 위탁운영 이 모두 직영운영으로 이관되어 교육청 관리 감독으로 일원화된 사례가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위탁운영에 대한 유형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실무자의 의견을 배제해서도 안 되며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폭넓게 바라봐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종사자 간 이견을 좁히는 문제

주제발표1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협력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친밀감(28.0%)을, 초등돌봄교사들은 상대기관의 특성이나 입장 이해하기(27.3%)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은 서로의 기관 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계의 필요성에서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2.1%로 이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22.4%, 초등돌봄교사의 경우 44.6%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에 협의체 구성도 센터장이나 기관장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협력 및 연계에 있어서의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초등학생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0시 34분으로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초등학생은 적어도 밤 9시~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가야 성장 발육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오후와 야간 시간 운영을 1개실에 총 2명의 담당자와 보조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욱이 학교 내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운영주체는 기존의 초등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초등보육(돌봄)교사에게 국가 차원의 연수지원 및 양성체계를 갖춰 적절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질적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돌봄교실의 초등보육(돌봄)교사가 총괄적인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게 하여 돌봄의 질 향상과 아울러 운영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상황별로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부모들 역시 이를 신뢰하여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여주기 식 상부기관의 하달방식이나 단체장 중심의 협력과 연계 방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계 방안 즉,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계 방안을 논해야 하며, 형식적인 지원센터가 아닌 실질적인 방과후지원센터나 컨설팅 지원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참고자료

- 교육부(2014),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4), 4. 9일자 보도자료 : 초등돌봄교실 추가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사단법인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2013), 교육부 제안자료.
- (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사)전국지역아동센터(2013),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 협력방안 연구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2013), 아동 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끝.

토론 4

방과후체계간의 협력 모델의 실태

양유진

(재)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
남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PM

“청소년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¹¹⁾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목적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2. 운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청소년방과후활동의 지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3~5

3. 운영 현황

1. 추진체계 : 여가부 → 시도, 시군구/국비지원율(서울 30%, 지방 50%)

11) 201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발송자료(사업안내)

- ※ 운영지원단(평가, 교육, 운영지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운영
- 2. 사업규모 : 전국 2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12년도 : 200개소)
- 3. 추진경과 : '05년 46개소 시범실시, '06년부터 본격 운영(100개소)

〈연도별 사업 규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운영 개소수	185개소	178개소	161개소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참여 청소년 (연인원)	7,980명 연2,242천 명	7,560명 연2,116천 명	6,762명 연1,905천 명	8,000명 연2,200천 명	8,000명 연2,200천 명	8,000명 연2,200천 명	8,000명 연2,200천 명

- 4.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 차상위계층(초4~중2)
*일부 시범적으로 맞벌이 가정 청소년 대상 : 혼합형 1개소 운영 중
- 5. 운영장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방과후아카데미로 지정·운영
- 6. 운영방법 : 시설당 40명(반당 20명), 1일 5시간 내외, 토요일 및 방학 포함
- 7. 지도자 : 전담인력(PM, SM), 전문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 인력풀

구분 ¹²⁾	업무	자격요건
운영 책임자 (PM)	PM (Project Manager) - 1명 전담배치 - 운영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육성 분야 및 방과후지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실무 지도자 (SM)	SM (Schedule Manager) - 1개반 1명 - 자기개발활동 지도(1일1시간) -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 문자메시지·급식 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육성 분야 및 방과후지도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12)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메뉴얼(21쪽)- 운영 총괄 인력 참고

8. 지원내용 :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 캠프, 부모교육, 급식 및 건강지원, 귀가지원 등
- *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 지원 (생활·교육·체험·안전)
 -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 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9. 운영 성과
-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관리 중 우수 사업으로 선정('11년 12월)
정부 국정관리 과제(1,000여개) 중 우수운영(총4개사업 선정) 관리과제로 선정
 - * 국정과제 대한 전문가 및 부처 담당자 참여 워크숍 사례발표(12.8~9)
 - 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 시스템화
 - 선진형 사업관리 시스템 도입(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운영환경조성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극 활용)
 - 2012년 사업운영아카데미 전수운영평가 실시(200개소)
 - * 최우수 아카데미 16개소 선정(여성가족부장관 표창)
 - * 평가미흡 등 아카데미 4개소 사업 지원 중단 조치 시행, 신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신규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조기 정상화 지원(전문가 현장컨설팅 및 우수아카데미 멘토 지정 등)
 -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현장 만족도 및 효과성 달성
 - 수요자인 청소년 및 학부모의 높은 효과·만족도 달성
 - * 청소년 : 84점의 만족도 기록/ 학부모 : 83.5점의 만족도 기록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학업성취, 성취동기, 스트레스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 창출

II.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실태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연령 제한

2013년 11월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부처공동 권역별 워크숍에서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15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2016년도에는 5~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6학년, 중등 1~2학년 중 지자체별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연령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4학년~중등 2학년까지로 학년이 한정되어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4년에는 돌봄서비스 대상 기관이 아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식 부족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생소한 서비스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전국 200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 대구지역에는 10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교실 및 드림스타트에 비해 대상 학년의 제한 및 수적 열세 (각 기관 당 40~60명 정원)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로서의 인식이 부족함이 사실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홍보를 담당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아닌, 소속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메뉴얼

〈프로그램 운영 일수 및 시수〉¹³⁾

주중 전문체험활동		주중 주요과목		주말운영시수	
일수	시수(시간)	일수	시수(시간)	일수	시수(시간)
299	299	299	299	12	48

13) 운영지원단 발송 2014년 기본운영계획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내역>¹⁴⁾

구분	세부내용	
전문체험활동 과정	주중체험활동과정 (주 5시간)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등)
전문체험활동 과정	주말체험활동과정 (월 1회 4시간)	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학습지원활동 과정 (기본공통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 (주 5시간)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교과학습과정 (주 5시간)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주0~5시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활동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필요시 주 2시간이상)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위와 같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메뉴얼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며, 수업시수 및 각 프로그램의 수업료 등이 메뉴얼로 정해져있다.

이에 2015년 돌봄서비스 대상인 4학년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업무메뉴얼 및 예산이 재편성 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 8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 대책 및 상근인력의 복지도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약직이며,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2년 이상 된 종사자에 대하여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상근인력은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부분을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차후에는 소속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14)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메뉴얼(14쪽)- 운영·지원내역

◎ 지원형-기본형 40명(2개반 기준, 20명 × 2반 = 40명) 모집단위별 비교표¹⁵⁾

구분	기존 운영기관	신규 운영기관
1. 인 건 비	PM 22,470,480 SM(2명) 34,300,080 퇴직금 4,730,880	PM 20,597,940 SM(2명) 31,441,740 퇴직금 4,336,640
소 계	61,501,440원	56,376,320원
2. 강 사 비	전문(주중) 16,030,000 전문(주말) 3,840,000 학습지원(주요과목) 13,740,000	전문(주중) 13,230,000 전문(주말) 3,200,000 학습지원(주요과목) 11,340,000
소 계	33,610,000원	27,770,000원
3. 급 식 비	32,776,000원	27,064,000원
4. 운 영 비	12,600,000원	11,050,000원
5. 특별지원 (캠프 등)	5,100,000원	5,100,000원
계(확정금액)	145,587,440원	127,360,320원

Ⅲ. 제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하는 ‘부처통합 방과후돌봄서비스’정책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유사·중복누락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획 및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부처별 유기적인 연계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 이혼 등이 증가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여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초단위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위기청소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과 프로그램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5) 20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메뉴얼(37쪽)- 운영 유형별 예산표

이 수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위 사람은 2014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전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주제 :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 후 협력
- 일시 : 2014년 5월 23일(금) 09:30~13:00
-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센터 105호

2014년 5월 23일

한 국 방 과 후 아 동 지 도 학 회 장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 후 협력

인 쇄 : 2014년 5월 22일

발 행 : 2014년 5월 23일

발행인 : 서혜전

발행처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편집·인쇄 : 양서원 출판그룹 (031)955-8000
